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2 선고 2022가단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277,4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77,4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는 200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으로 상대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D로부터 순차 양수한 카드사용대금채권 2,955,039원 및 그 중 1,329,999원에 대한 200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499550,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2. 22. 확정되었다.

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1. 7. 24.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C, 피고와 망인의 대습상속인 F, G은 2021. 12. 22.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C, F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1.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22. 1. 28.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3. 18. H으로부터 잔금 45,000,000원을 수령한 후,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C은 2022. 7. 28.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7,452,749원 및 이에 대한 장래 발생할 지연손해금임을 인정하되, 2) 7,000,000원으로 채무를 정하고, 그 중 2,000,000원을 2022. 8. 12.에, 각 500,000원씩을 2022. 9. 25.부터 2023. 7. 25.까지 총 10개월간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감면요청서(분할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C은 위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22. 8. 11. 2,000,000원, 2022. 9. 26.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갖는다. C은 2021. 7. 24.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H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채권액인 6,277,4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6,277,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에 기한 채권 중 4,500,000원(= C 인정 채무액 7,000,000원 - C 변제금액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금전지급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상속인인 C, 피고와 망인의 대습상속인 F, G이 2021. 12. 22.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C, F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월군청,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 사망 전에 망인의 자녀들 중 피고가 주로 망인을 부양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망인 사망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자녀인 C과 L의 가족에게 각 10,000,000원씩을 나누어주고 남은 돈을 피고가 가지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와 같은 망인의 유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C에 대한 채권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C이 원고와의 분할 상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후에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그 기간 동안 C에 대하여 어떻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내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조적조

면 적 : 1층 호 41.385 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92.7 m²

대지권의 종류 :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 292.7 분의 27.63

-이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관할-

1) 상호를 '주식회사 I'에서 2009. 7. 17. '주식회사 J'로 변경하였다가 2011. 9.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관련소송 판결에 기한 2022. 7. 28.까지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6,429,069원[= 2,955,039원 + {1,329,999원 $\times$ 0.2 $\times$ (13 + 22/365)}]이었음에도, C은 2022. 7. 28. 현재 7,452,749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금액으로 인정하였다.